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2023년 5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3년08월22일		
이사정수	8	재 적	8
감사정수	2	이 사	

1. 일 시 : 2023. 08. 30(수) 19:00

2. 장 소 : 이중본 식당

3. 참석이사 : 차종선이사장, 송용운이사, 최희웅이사, 양승상이사, 홍재진이사

4. 불참이사 : 김용규이사, 김성기이사, 김승주이사

5. 참석감사 :

6. 사 회 : 차종선이사장

7. 회의안건 : 1) 법인인수합병 추진 보고의 건

2) 제8대 총장 선임 보고의 건

3) 대외부총장 임명 보고의 건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심의의 건

8. 회의내용

이사장이 참석 여부를 확인하니 참석 5명, 불참 3명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법인국장에게 전 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 법인국장이 전 회의록을 낭독 보고하니 홍재진이사의 동의와 양승상이사가 재정하여,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이 찬성 “예” 하므로 전 회의록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됨을 선언하다.

이 사 장 : (회의 안건을 낭독하고, 안건 중 3건은 보고의 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1건은 심의의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상정 여부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 “예” 하므로, 회의 안건을 채택하다.) 의안 1호 법인인수 합병 주

차종선	송용운	최희웅	홍재진	양승상

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법인사무국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사무국 국장 : 지난 이사회에서 고양학원과의 법인인수와 관련한 투자금 중 약정한 금액을 고양학원이 2023년 8월 25일까지 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양학원에서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만 이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9월중에 이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 장 : 먼저 고양학원의 이사장이신 송용운이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용운이사 : 지난번 이사회에서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한 대외채무 상환을 위한 투자금 30억원과 학교운영비 부족금 10억원 중 미이행한 7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2023년 8월 25일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외채무 상환금 30억 원 중 우선 5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9월 중에 모두 이행할 예정이니, 이사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상이사 : 고양학원에서는 2022년 3월 19일 우리법인의 김점옥, 전대복, 이명승, 홍재진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고양학원에서 직접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 약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양학원 이사장이신 송용운이사께서 인수한 채무의 변제방법 등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이후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인수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양학원에서는 향후 투자금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수한 채무에 대한 변제방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학원의 서면을 받아 본 후 고양학원과의 약정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 '채무인수 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우리법인의 채무를 고양학원이 인수하였으므로, 채권자 김점옥, 전대복, 이명승, 홍재진의 입장에서는 채무인수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원래 채무자인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인수채무자인 고양학원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

차종민	송용운	양승상	김재진	이명승

었는데, 고양학원에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지도 구체적인 변제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니 마음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고양학원에서는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진이사 : 양승상이사의 주장에 전적을 찬성합니다. 저도 고양학원이 인수한 채무의 채권자인데 고양학원이 언제, 얼마를 변제할 예정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변제방법,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이번 안건은 보고의 건이니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양승상이사의 의견과 같이 우리 법인에서 고양학원에 투자금 집행 일정과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고, 고양학원에서 채무 인수한 채권자 김점옥, 전대복, 이명승, 홍재진에 대한 채무 상환 일정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고양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겠습니다.(이사들 전원 찬성한다고 대답하다.)

의안 2호 제8대 총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보고의 건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것이므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 현 총장의 임기가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현 총장을 연임하거나 새로운 총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양학원의 약정 투자금 입금을 전제로 현 총장을 제8대 총장으로 선임하여 연임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고양학원의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9월에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수도 현 총장을 연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재진이사 : 약정한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법인인수합병 약정은 해제될 수도 있고, 약정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30억원이 돌수되는 등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총장님을 제8대 총장으로 임명한다면 학교와 구성원들의 혼돈이 예상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학원에서 9월중에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고 하니 이후 추진된 이행 상황등을 확인한 후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8

차종석	홍재진	이명승	%재진	양승상

대 총장을 임명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희웅이사 : 홍재진이사님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양 법인이 신뢰를 가지고 논의해 간다면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총장직무대행이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고 단기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 장 : 고양학원이 약정 투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 주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주는 동안에 학교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 총장직무대행체제로 학교가 운영되는 동안 더욱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당분간 제8대 총장을 선임하지 않고 총장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이사님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의안 3호 대외부총장 임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보고의 건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이므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 장 : 우리 법인 정관 제38조 제4항은 부총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장께서 휴직중에 계시고, 총장직무대행은 이해관계자(부총장 후보자)이므로, 총장의 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그 대신 이사님들의 의견을 물어 대외부총장을 임명할까 하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대외부총장으로 학교 창립때부터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보직을 거친 고광모 교수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양승상이사 : 고광모 교수는 이번 8월 31일자 정년퇴직 대상자인데 대외부총장으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고광모 교수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재진이사 : 고광모 교수는 우리 학교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교직원들과의 소통도 원만할 것이므로, 고광모 교수를 대외부총장으로 임명하는데 찬성합니다.

이 사 장 : 고광모 교수를 대외부총장으로 임명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이사님들 전원 “이의가 없다”고 답하다) 고광모 교수는 2023년 9월 1일 자로 특임교수

차종인	최희웅	홍재진	김재진	양승상

의 신분에 임명되고 대외부총장의 보직이 부여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송용운이사님께서 제8대 총장으로 임명되면 대외부총장인 고광모 교수와 함께 학교 운영을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송용운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송용운이사 : 고광모 교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제가 도움을 받을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잘 소통하여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 장 : 다음은 의안 4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우리법인은 (유)건윤과 2012년 양주캠퍼스 기숙사 신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협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건윤이 투입한 사업비(진입토지대금 포함) 7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우리 법인이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 본 안건입니다.

홍재진이사 : (유)건윤의 청구금액이 얼마이고 법원의 조정결정금액이 얼마인가요.

이 사 장 : (유)건윤의 우리법인에 대한 청구금액은 원금잔액 513,551,41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1,123,060원을 합한 1,094,674,470원이고, 법원의 조정결정금액은 800,000,000원입니다. 우리 법인이 8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유)건윤은 위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한 진입로 토지 약 100평에 대한 약정인의 지위를 우리법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최희웅이사 : 법원의 결정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294,674,470원을 감액해 준 것이고, 우리법인이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승상이사 : 제청합니다.

이 사 장 : 오늘 상정한 의안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사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총리	송용운	최희웅	홍재진	양승상

사회의 회의록은 학교의 현안에 대한 안건이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사님들 전원 “찬성”이라고 답하다) 본 이사회는 금일 20시 00분에 폐회하며, 참석하여 주신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 결의사항

- 1) 법인인수합병 추진 보고의 건 : 약정이행을 지켜 본 후 이사회에서 논의
- 2) 제8대 총장 선임 보고의 건 : 약정이행을 지켜 본 후 이사회에서 논의
- 3) 대외부총장 임명 보고의 건 : 고광모 교수를 대외부총장으로 임명에 동의
-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심의의 건 : 이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2023년 08월 30일

작성자 : 법인국장 차종삼

참석임원	이사장	차종선	차종삼
이사	송용운	홍재진	홍재진
이사	홍재진	양승상	양승상
이사	최희웅	최희웅	최희웅

차종삼	송용운	홍재진	양승상	